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뉴파워암보험(갱신형) - 주계약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뉴파워암보험 정기특약(갱신형) - 종속특약

2. 보험의 세목

구 분	보험의 세목	
주계약	1형	순수보장형
	2형	만기지급형(5%지급형, 10%지급형)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구 分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초계약	만 15세 ~ 60세	10년	전기납
	25세 ~ 70세	10년	
	71세 ~ 79세	80세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한다. 다만, 갱신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70세를 초과 하는 경우 80세만기로 최종갱신한다.

4.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6.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계약 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다.
-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2)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갱신 할 수 있다.
- 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 다만,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80세만 기로 갱신한다.
- 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한다.
- 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 바.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1) ‘나’의 ‘(2)’의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바’의 갱신계약의 보험요율

아.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갱신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주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더라도 특약은 갱신할 수 있다.

7. 기타

가. 종속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나.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입방법이 자동이체 납입인 경우에는 주계약 및 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 영업보험료의 1%를 할인한다.

(2) 「6.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주계약 및 특약 갱신계약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3) ‘(1)’ 및 ‘(2)’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계산하며 할인율은 표준이율로 계산한다.

라. 이 보험은 신판매채널(인터넷, 전화로 판매하는 채널) 전용상품이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